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480호
2. 발 의 자 : 황유정 의원(찬성자 21명)
3. 발의일자 : 2026년 02월 09일
4. 회부일자 : 2026년 02월 12일

II.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 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상위법인「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이 종료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 또한 조례명과 본문에 ‘노동자복지시설’, ‘노동복지시설’, ‘노동자 복지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본문의 경우 조례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 하기 위함.
- 이에 노동복지시설 위탁 대상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 종료 기관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한편,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를 ‘노동복지시설’로 통일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노동복지시설 이용제한 사유에 따른 조 제목 변경(안 제5조).
- 나.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상 정비(안 제8조).
- 다. 위탁 취소에 따른 시설관리 조치 신설(안 제9조).
- 라. 노동복지시설 현행화 및 이용료 정비(안 별표 1, 2).

Ⅳ.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시설의 수탁기관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조정하고, 수탁기관의 시설관리 규정 신설과 노동복지시설의 이용료 정비를 통해 행정재산의 관리책임 강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

2. 노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¹⁾ 및 동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4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현황 >

(단위 : 천원)

시설명	설치일자	수탁기관	기능	2026년 예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1992.11.13.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자 복지증진	947,878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02.03.28.	재단법인 피플		733,998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포함)	2015.02.24.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5,498,30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2019.04.30.	전태일재단		1,308,835

- 이 중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과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은 일반노동자의 복지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개관 이후 특정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게 특정 단체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대로 일반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함(2020.4.17.).
- 이에 서울시는 양 노동자복지관을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전환하고, 조례 개정(2023.3.27.)을 통해 노동복지시설의 이용 기준과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²⁾를 징수하고 있음³⁾(참고자료).
-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복지관 리모델링 등 운영 여건 변화,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타 시설의 이용료 규정 미비에 따른 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2025.11.28.)에서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료 적용대상을 전체 노동복지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약칭으로 통일하고,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있음.

2) “사용료”는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수영장, 문화회관 등의 재산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2022.12.28.).

3) 징수한 사용료는 발생 즉시 시에 납부하고, 이용료는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수입금 잔액 및 발생 이자는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징수되는 이용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 주요내용 검토

(1) 운영 위탁 대상의 범위 정비(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는 노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 -----, ----- ----- ----- -----.

-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동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범위를 넘어 개인까지 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운영 위탁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이에 안 제8조는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4)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2) 시설관리 의무 신설(안 제9조)

- 안 제9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수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3.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 이는 위탁 종료 또는 취소 시 시설의 인계·인수 및 재산 관리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종료 시 수탁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형” 민간위탁의 경우 위·수탁 협약서 작성 시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점점 및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표준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현재 위·수탁 협약서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안 제9조는 기존에 위·수탁 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3) 노동복지시설 현행화 및 시설 이용료 정비(안 별표1, 2)

- 안 별표1과 2는 노동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노동자 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에 적용되던 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전체 노동복지시설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 먼저 안 별표1은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2025년 9월 말 운영을 종료⁵⁾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행정 현실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그리고 안 별표2는 서울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 일부에만 적용된 노동복지시설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과 이동노동자 쉼터(서울노동권익센터)의 부속시설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5) 서울시는 “노동센터 혁신방안(2023.6.)”에 따라 노동센터의 유사·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하였음.

< 개정조례안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료 세부내역 >

회의실 (복지시설 회의실 전체 적용)			강당			
면적	기본 이용 시간	금액(천원)	명 칭	시설명	기본 이용 시간	금액(천원)
33㎡이하	2시간	10 ~ 15	노동자복지관	강당	2시간	80 ~ 150
34 ~ 83㎡	2시간	20 ~ 30		소강당	2시간	60 ~ 120
84 ~ 165㎡	2시간	30 ~ 45	강북노동자 복지관	강당	2시간	80 ~ 150
166 ~ 248㎡	2시간	40 ~ 60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다목적홀	2시간	40 ~ 80

- 구체적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일부 시설(영상스튜디오, 생활체육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이동노동자 쉼터의 회의실 등이 안 별표2에 따른 이용료 징수대상에 포함됨.

< 개정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료 적용 여부 >

시설	공간명	개정 전 적용여부	개정 후 적용여부
서울노동자복지관	소강당, 대강당	○	○
강북노동자복지관	교육실, 시청각교육실, 강당	○	○
	영상스튜디오, 생활체육실	×	○
전태일노동복합시설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다목적홀	×	○
이동노동자 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회의실(북창, 상암), 교육실(합정 2개실, 서초, 북창)	×	○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시설의 본래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기능은 계속하여 무상으로 운영하되, 회의실 · 강당 등 대관 성격의 공간에 한하여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시설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되어 오던 이용료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노동복지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이용료 부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무상으로 운영되던 노동복지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노동자의 시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참고자료] 노동복지시설 사용료·이용료 징수 현황

☐ 시설별 사용료 징수 실적

시설명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노동자복지관	85,415천원	7,245천원	38,892천원	39,278천원
강북노동자복지관	70,515천원	-	31,372천원	39,143천원

☐ 시설별 이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단위 : 건, 명, 백만원)

연번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계	36	3,115	8	107	3,725	9	187	5,014	11
1	소강당 (5층)	25	1,325	5	54	1,718	4	47	2,118	6
2	대강당 (6층)	11	1,790	3	20	1,810	5	16	2,295	5
3	공유 오피스	-	-	무상	33	197	무상	175	933	무상

- 강북노동자복지관

(단위 : 건, 명, 백만원)

연번	시 설 명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인원	수입	건수	인원	수입	건수	인원	수입
	계	1,501	37,515	23	864	29,503	48	2,432	33,808	58
1	대강당	248	16,664	19	202	17,422	33	232	10,852	38
2	시청각교육실	320	8,644	4	236	6,030	10	268	7,017	12
3	교육실	373	5,961	무상	233	4,017	4	232	4,166	6
4	회의실 ('25.11월부터 폐지)	377	4,487	무상	141	1,800	1	159	1,492	2
5	다목적프로그램실	183	1,759	무상	14	59	무상	594	4,672	무상
6	생활체육실	-	-	-	5	28	무상	275	3,087	무상
7	공유오피스 내 미팅룸	-	-	-	24	105	무상	414	1,791	무상
8	영상스튜디오	-	-	-	9	42	무상	258	731	무상

- 전대일 노동복합시설(무상)

(단위 : 건, 명)

시 설 명	단 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이용인원	6,771	6,540	12,418
	대관건수	288	337	762
공연장	이용인원	4,544	3,495	6,377
	대관건수	103	91	180
교육실	이용인원	1,241	2,049	3,153
	대관건수	79	130	220
세미나실	이용인원	888	790	2,171
	대관건수	89	79	211
회의실	이용인원	98	206	717
	대관건수	17	37	151

- 이동노동자 쉼터(무상)

(단위 : 명, 건)

연 번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대관인원	대관건수	대관인원	대관건수	대관인원	대관건수
	계	4,327	513	5,935	757	9,622	1,093
1	합 정	2,516	309	3,363	388	5,653	556
2	상 암	1,161	141	1,867	283	1,877	279
3	복 창	480	43	301	38	1,315	197
3	서 초	170	20	404	48	777	61